

	교육과정품질관리(CQI)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5. 10. 1.
		최종개정일자	2016. 3. 31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의 교육과정품질관리 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, 이하 “CQI”라 한다)와 CQI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1. 교육과정품질관리 :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·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와 개선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CQI라 한다.
2. 교육과정운영 : 학습자가 달성해야 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을 조직, 지도, 평가 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.
3. 수업설계 : 교수자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강의, 실습, 평가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.
4. 직업교육환경 :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, 실험실습실, 기자재, 도구 등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·기자재 등을 말한다.
5. 만족도조사 : 학교가 교육과정운영 후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만족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.
6. 강의평가 : 교수의 수업내용, 진행방식, 수업준비 등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(CQI 절차) 대학 및 각 학과의 CQI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직업교육환경과 학사운영체계를 준비한다.
2.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.
3. 교과목별(교수) 강의평가와 교육환경, 수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4. 수업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향상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5. 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한다.
6. 학과 자체평가와 산업체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개선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과 CQI와 대학 CQI에 적용한다.

제5조(학과 CQI) ① 각 학과는 NCS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각 학과는 운영결과 보고서, NCS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

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학 CQI) ①대학은 NCS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학과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NCS지원센터는 대학 자체평가 결과보고서, 대학 운영결과 보고서, NCS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CQI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기획산학처장,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, 행정지원처장 등 당연직 위원 5인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3.31>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)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NCS지원센터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CQI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
3.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
4.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에 관한 사항
5. 기타 CQI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의) ①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료제출) ①위원회가 CQI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행정부서 및 학과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.

②행정부서 및 학과는 학년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운영 실적 보고서와 차기학년도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 및 환류) 품질관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교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의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